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7881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857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7881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2. 8. 31.

판결선고 2022. 9. 2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1가소10336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대리하여 피고와, 피고가 C이 김천시 D 외 5필지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하면 C이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8. 22.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공장 3,442평 중 일부인 2,125평을 매수하였다.

다. C은 2019. 10. 17. E와 이 사건 공장 중 김천시 D, F, G, H 소재 공장 2동 및 I의 66/1445 지분을 대금 10억 6,000만 원에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앞서 E는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라. C은 2019. 10. 18.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는 수령할 금액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E는 2020. 1. 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하에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맡긴 1,000만 원의 수령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업무처리를 위한 경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350만 원을 주어 이를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이장, 부녀회장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200만 원은 피고가 이장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4, 6,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약정은 폐기물처리공장 허가 취득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데, 피고가 그 허가를 취득해 주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중개수수료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E가 피고에게 보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350만 원을 주어 이를 이장 등에게 지역발전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폐기물처리공장 허가를 취득해 주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역발전기금 3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행정대행용역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폐기물처리공장 허가를 취득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대행용역비 1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2,450만 원(= 중개수수료 1,000만 원 + 계약금 1,000만 원 + 지역발전기금 350만 원 + 행정대행용역비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C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작성한 포기각서는 피고가 더 이상 받을 금액이 없다는 취지일 뿐 이미 수령한 1,000만 원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계약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954만 원과 이 사건 공장의 경계측량 비용 등 업무대행 경비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장의 경계측량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그 주장과 같은 자동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다. 지역발전기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장 등에게 지급하였던 지역발전기금 중 200만 원은 피고가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애초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50만 원은 피고가 마을개발 위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서를 받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700만 원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나머지 지역발전기금 150만 원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폐기물처리공장 허가까지 취득해 주기로 하고 지역발전기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가 이를 다시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행정대행용역비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만 원은 피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가 폐기물처리공장 허가까지 취득해 주기로 하고 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 지역발전기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